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과세자료법)

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648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법인세제과) 044-215-4226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과세자료(課稅資料)의 제출・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(根據課稅)와 공평과 세(公平課稅)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국세"란「국세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.
- 2. "과세자료"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·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제4조(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)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(이하 "과세자료제출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1. 7. 14.>
 - 1. 「국가재정법」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(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그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- 3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
 - 4.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
 - 5.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・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・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
 - 6.「민법」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·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,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제5조(과세자료의 범위)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·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 - 1. 법률에 따라 인가・허가・특허・등기・등록・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
 - 2.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· 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
 - 3.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·판매·생산·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
 - 4.「부가가치세법」과「소득세법」또는「법인세법」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
 - 5.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·보험급여·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(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)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·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
 - 6.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
- 제6조(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) ① 국세청장(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명백한 조세 탈루(租稅脫漏)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(이하 "금융거래정보"라 한다)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회사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(법인을 포함한다)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 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7. 14.>
 -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.
 - 1. 거래자의 인적사항
 - 2. 사용목적
 - 3.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
 - ④ 금융위원회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(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)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1.>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제7조(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)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 ·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(이하 "세무관서"라 한다)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. 다만,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
- 제8조(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)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2. 26.>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**제9조(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)**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 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・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**제10조(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)**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 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·검사하는 기관(이하 "감독기관등" 이라 한다)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12. 26.>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제11조(비밀유지 의무) ①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(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 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)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국세기본법」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, 1, 1,>
 - ②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제12조 삭제 <2008. 12. 26.>

제13조(벌칙)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제14조(벌칙)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(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)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 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제15조(징역과 벌금의 병과)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부칙 <제17648호,2020. 12. 22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